Eunpyeong-Gu

Ⅳ

서울시 복지 · 통장사업

43	지역사회 통합복지체계 구축사업
44	은평형 「돌봄SOS센터」사업
45	푸드마켓 이용/푸드뱅크 운영
4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7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48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49-1.2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
50	꿈나래통장사업
51	희망두배청년통장사업
52	희망저축계좌(Ⅰ , Ⅱ)사업
53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54	디딤씨앗통장사업



북한산 큰 숲, 내일을 여는 은평

43 지역사회 통합복지체계 구축사업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351-7002

분 야	정책과제 및 핵심사업(세부지표명)	추진부서
돌 봄 복 지	○ 복지인력 전문성 확보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 ○ 찾 · 동공무원 역량강화 기반조성 ○ 위기가정 발굴 ○ 위기가정 지원	복 지 정 책 과
	○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	생 활 복 지 과
취 약 계 층 소 득 증 대 및 편 의 지 원	○ 요양기관 확충 기반마련 및 서비스 품질강화 ○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 어르신 인권지킴이 운영 ○ 주민 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	어르신복지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정비 ○ 중증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과

44 은평형「돌봄SOS센터」사업

•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351-7045

구 분	내 용
지원목적	○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로는 자격 기준에 맞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장애인 · 중장년(만 50세이상)
지원내용	○ 돌봄SOS센터 서비스 구성 및 주요내용 – 5대 돌봄서비스(수가체계) + 5대 중장기 돌봄연계(비수가 체계)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이용기준 및 한도
일시재가 서비스	돌봄 대상자 가정 방문, 당사자 수발	2시간 38,390원 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 서비스	단기간 시설 입소	1일 60,490원 연간 최대 14일
동행지원 서비스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60분 14,900원 연간 최대 12회
주거편의 서비스	가정 내 간단한 수리 · 보수, 대청소, 방역, 세탁	60분 14,900원
식사지원 서비스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1식 8,400원 연간 최대 30식
안부확인 연계	일상적 안부 · 야간 안전 확인, 말벗 등	비수가
건강지원 연계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비수가
돌봄제도 연계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 제도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비수가
사례관리 연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등	비수가
긴급지원 연계	국가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비수가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1,600,000원
○ 서비스 이용금액 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85% 이하(※ 그 외 대상자는 전액 본인부담)

지원절차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지원절차

돌봄신청 · 접수	→	방문확인	→	돌봄계획 · 수립	→	서비스제공	→	점검 · 종결
대상자확인		상담 및 돌봄욕구 판단		계획서 작성 및 제공기관 의뢰		서비스제공 (협약기관)		결과 보고 및 비용정산

45 푸드마켓 이용/푸드뱅크 운영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351-7009

시 설 명	은평 푸드마켓(☎354-1377)
장 소	○ 은평구 서오릉로 134-5(대조동) (지하철 6호선 구산역 1번 출구)
이용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된 자
운영시간	○ 평일 10:00 ~ 17:00 ※ 수요일 10:00 ~ 20:00 (연장운영, 기관사정에 따라 미운영 될 수 있음)
물품제공	○ 무상 (가공식품, 농 · 수 축산물, 생활용품 등)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11층)
사업내용	○ 「푸드마켓」은 기업과 개인, 기관, 대형식품유통업체 등으로부터 잉여식품이나 물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는 사랑나눔의 공간으로서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마켓
취급물품	○ 가공식품(라면류, 통조림류, 조미료, 가공된 반찬류 등), 농 · 수축산물 (쌀, 기타곡물, 과일, 채소류, 수산물, 육류 등), 생활용품(화장품, 화장지, 세제, 신발 등) 등 ※ 월 4 ~ 5개 품목 선택 가능 (1개 품목이란 1 ~ 3개가 될 수 있음) 예) 라면은 3봉지가 1개 품목
후원금(품) 기부안내	○ 「아름다운 기부!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분은 은평푸드마켓으로 연락하시면 차량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물품을 수령하며, 기탁된 성금은 100% 은평푸드마켓 물품구입에 사용함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52301-04-138633(예금주 : 은평푸드마켓)
시 설 명	**은평 푸드뱅크(☎354-1377)**
사업내용	○ 조리된 잉여 식품을 기탁 받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에 식품나눔을 통해 사회연대감을 조성하고자 하여 만든 식품자원 복지 서비스사업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11층)
운영현황	○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단기보호센터, 노숙인 쉼터 등 월 평균 45개 시설에 기부식품 지원 – 희망을 나누는 반찬가게 운영 : 학교 및 단체급식소로부터 기부 받은 조리된 음식을 검수 및 재포장 후 반찬가게 회원에게 무료 제공

4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351-7064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신청방법	○ 신 청 인 : 수급권자 · 친족 ·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부양의무자 정보이용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 신청 탈락 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사 후 결정
선정기준	○ 신청기준 :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 ○ 소득기준(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 생계비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미소유자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
1) 청약,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나 일반재산에 포함
2)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 적용
– 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 1억원) · 재산(9억)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80만원), 해산급여(70만원)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8	1,036,051
최소지원	소득평가액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생계급여	97,241	163,004	209,735	256,054	301,226	345,350

지원절차
○ 신청서류 제출 및 초기상담(동 주민센터) ⇒ 서류 접수 및 조사(복지정책과) ⇒ 보장결정, 통지, 급여지원(생활복지과) ⇒ 수급자 관리(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47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2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생계비 · 주거비 ·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한시) ※ 코로나19 관련 소득 및 재산 한시적으로 기준 완화(위기경보 수준 최고 유지시)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85%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재산기준 : 310백만원 이하(금융재산기준 : 1천만원 이하)
▶ 379백만원 이하(한시)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구 ·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방법

○ 현금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 현물지원
– 물품구입 지원, 의료비 송금, 임차료 입금, 공과금 수납기관 입금 등

지원종류

○ 생계비 지원: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1,000,000원

○ 의료비 지원 :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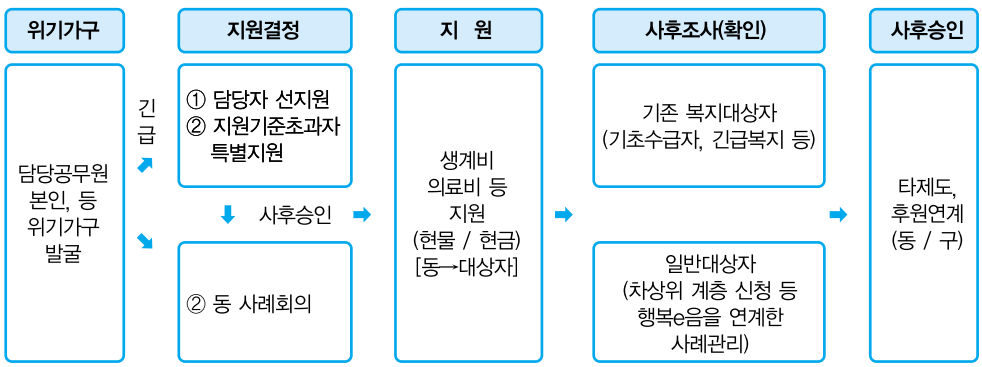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 주거비 지원 : 주거비(월세), 임시주거(고시원, 모텔, 여관 등), 집수리 비용 등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 기타지원 :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절차



48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351-7085

구 분	내 용
시행목적	○ 저소득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지원대상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법정 차상위 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2022년)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지원제외 대 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제외(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급가능)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제외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단, 분실 · 도난 · 멸실 등 소명자료 제출 시 가능)
지원가구 제 외 자	○ 지원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해외에서 30일을 연속으로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단, 수급가구가 1인 가구인 경우 180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산일은 전부 출국일 그 다음날로 함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사람, 행방불명자
신청방법	○ 신 청 인 : 신청인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2촌이내), 공무원 대리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처리절차 : 신청 (동 주민센터) ⇒ 조사 및 결정(구청) ⇒ 급여 지원 및 관리(구청)
지원내용	○가구별 지원 금액(서울시 조례개정이후 금액변동사항 있음)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월 지급액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특정 바우처	기존	120,000원	12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아동	아동 1인당 4만원 지원					

49-1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351-7016

구 분	설명절 위문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은평구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지방보훈청 통보명단(2022. 1. 6.) 기준 은평구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은평구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타 조례(서울시)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1인당 4만원(연1회)	1인당 20만원(1회)	1인당 월 4만원
지급방법	설명절 전 본인 계좌입금 ※ 계좌 미확인자 : 안내문 발송 후 당해연도 내 지급	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계좌입금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구비서류	계좌변경 요청 시 : 국가보훈대상자의 통장사본	– 사망관련 증빙서류 – 사망자의 유족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증명서(보훈청발급) – 통장사본
신 청	신청 불요 * 단, 계좌등록 및 변경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문 의 처	복지정책과 보훈담당(☎351-7016)		

49-2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351-7016

구 분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서울특별시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본인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4촌 이내 형제자매 포함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가구 ※ 생활지원금 대상자 중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기초연금수급자는 지원단위 변경 : 가구->개인, 가구 대표 1인 지급에서 개별지원으로 변경 ('22.1.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중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1)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2) 중상이자 3) 용사촌거주자 4) 6.25 참전 5) 저소득 국가유공자 6) 80세이상 고령자 7) 전몰군경미망인, 순직군경미망인 (19년 신설) ※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지급명단 통보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	1인당 월 20만원	1인당 월 10만원	1인당 월 10만원	1인당 5만원 ~ 10만원 (연1회)
지급방법	3.1절/광복절 경 본인 계좌입금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6.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해당없음
신 청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신청 불요
문 의 처	복지정책과 보훈담당(☎351-7016)				

50 「꿈나래 통장」 사업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4

구 분	내 용
지원목적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함
지원자격	○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21년도 기준으로 22년도 변동될 수 있음) ① 공고일('21. 8. 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21년에 만 14세 이하인 출생년생 (※ 해당출생일 : 2006. 1. 1.이후) – 부모 : '21년에 만 18세 이상인 출생년생 (※ 해당출생일 : 2003.12.31.이전)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③ 공고일('21. 8. 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2022년 상반기 사업 공고시 공고기준 적용(https://www.welfare.seoul.kr)
월적립액 적립기간	○ 월 적립액 : 가입자 5 · 7 · 10 · 12만원 + 시비 · 후원금 2.5만원 ~ 10만원 ※ 매칭지원 비율 1 : 0.5 ~ 1 ○ 적립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총 적립금 : 최대 1,200만원 + 이자
지원절차	신청접수 (동 주민센터, 8.2. ~ 8.20.) ➡ 적격여부, 공적조회 및 서류심사 (자치구 (시 · 복지재단 · 은행), 8.23. ~ 10.29.) ➡ 선정자 발표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 11.12.) ➡ 약정식 약정체결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11.15. ~ 11.26.)
모집인원	19명(구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 및 보육료 지급인원 비율기준)
제 외 자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 희망플러스 · 꿈나래 · 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 가입 가능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4
기준 중위소득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4

51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4

구 분	내 용
지원목적	저소득층 근로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자격	○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21년도 기준으로 22년도 변동될 수 있음) ① 공고일('21. 8. 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 18세 ~ 만 34세인 출생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1.1. ~ 2003.12.31. 출생자 ③ 공고일('21. 8. 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④ 공고일('21. 8. 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22년 상반기 사업 공고시 공고기준 적용(https://www.welfare.seoul.kr)
월적립액 적립기간	○ 월 적립액 : 가입자 10만원 · 15만원(본인저축액의 100% 적립) ○ 적립기간 : 24개월(2년) · 36개월(3년) ○ 총 적립금 : 최대 1,080만원 + 이자
지원절차	신청접수 (동 주민센터, 8.2. ~ 8.20.) ➡ 적격여부, 공적조회 및 서류심사 (자치구 (시 · 복지재단 · 은행), 8.23. ~ 10.29.) ➡ 선정자 발표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 11.12.) ➡ 약정식 약정체결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11.15. ~ 11.26.)
모집인원	332명(청년인구 등을 기준으로 서울시 배정)
제 외 자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 희망플러스 · 꿈나래 ·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 ·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는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4

52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

•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 ☏351-7054

구 분	내 용
지원목적	○ 일하는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통장 Ⅰ)와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통장 Ⅱ)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탈 빈곤 기반 조성
지원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통장 Ⅱ, 50% 이하)인 생계 · 의료급여수급가구(통장 Ⅱ, 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보장시설 시설 수급가구(소득요건 충족 시) ※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 ·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사업 참여자 및 혜택 자는 중복 참여 불가 (단, 아동 대상 '꿈나래통장' 등 참여가구는 가능)
소득기준특례	○ 소득이 소득하한선 이상, 소득상한선 이하일 경우 가입 및 유지 가능

【2022년 소득 상 · 하한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1,657,681
	유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소득상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유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본인 저축 + 근로소득 장려금 + 민간매칭금 적립
- Ⅰ사업 : 개인저축(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Ⅱ사업 : 개인저축(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22 신규 가입자 지원 내역 예시

구분	지원예정금액
희망저축Ⅰ	본인저축 10만원 + 월소득장려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α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탈수급장려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희망저축Ⅱ	본인저축 10만원 + 월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α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절차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과 Ⅱ
① 지원신청 접수(동 주민센터) ② 심사 및 선정(구 생활복지과) ③ 결과통보 (구 생활복지과 → 동 주민센터 → 대상자) ④ 신규 계좌개설(가입자 → 하나은행) ⑤ 본인저축(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 ⑥ 근로장려금 매월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⑦ 만기, 특별중도해지 시 장려금 지급	① 지원신청 접수(동 주민센터) ② 소득조사(구 복지정책과) ③ 자격 확인 및 추천(구 생활복지과) ④ 대상자 선정(구 생활복지과) ⑤ 결과통보(구 → 대상자) ⑥ 신규 계좌개설(가입자 → 하나은행) ⑦ 본인저축(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 ⑧ 근로장려금 매월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⑨ 만기, 특별중도해지 시 장려금 지급

기타사항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는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상담(연 2회이상, 총 6회)이수 필수 ⇒ 미 이수시 중도해지 사유

53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 ☏351-7054

구 분	내 용
지원목적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촉진
지원대상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10 ~ 50만원)에 10만원 / 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가입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지원절차	○ 1단계 : 지원신청(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 ○ 2단계 : 지원자 소득자격조사 및 대상자 결정(구 통합조사팀, 생활복지과) ○ 3단계 : 결과통보(구 생활복지과 → 대상자, 은평지역자활센터) ○ 4단계 : 본인저축(가입자) – 본인 저축입금은 신규 가입 후 계좌이체 실시, 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 ○ 5단계 : 장려금 적립 및 지급(한국자활복지개발원) ○ 6단계 : 교육 및 사례관리(은평지역자활센터, 시군구)
기타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교육(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 LMS 이용하여 교육 이수

구분	지원내용
차상위이하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 장려금 30만원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3년간 약 1,440만원 + α
차상위초과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 장려금 10만원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3년간 약 720만원 + α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54 「디딤씨앗통장」 사업

•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351-6207

구 분	내 용
지원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 취업 · 창업 ·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 장기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소득기준특례	○ 해당사항 없음
지원내용	1. 매칭 및 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 : 2 매칭 지원 ○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2. 적립금 사용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 기술자격취득 ·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절차	① 디딤씨앗통장 계좌 개설 신청(동 주민센터) ② 심사 및 선정(구 가족정책과) ③ 계좌 발급(협력은행) ④ 아동 저축 ⑤ 정부 매칭지원금 적립(구 가족정책과) ⑥ 만기지급(구 가족정책과)
기타사항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 지원 금지 – 기초수급자 가정의 아동지원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수급가정 신규가입 제외